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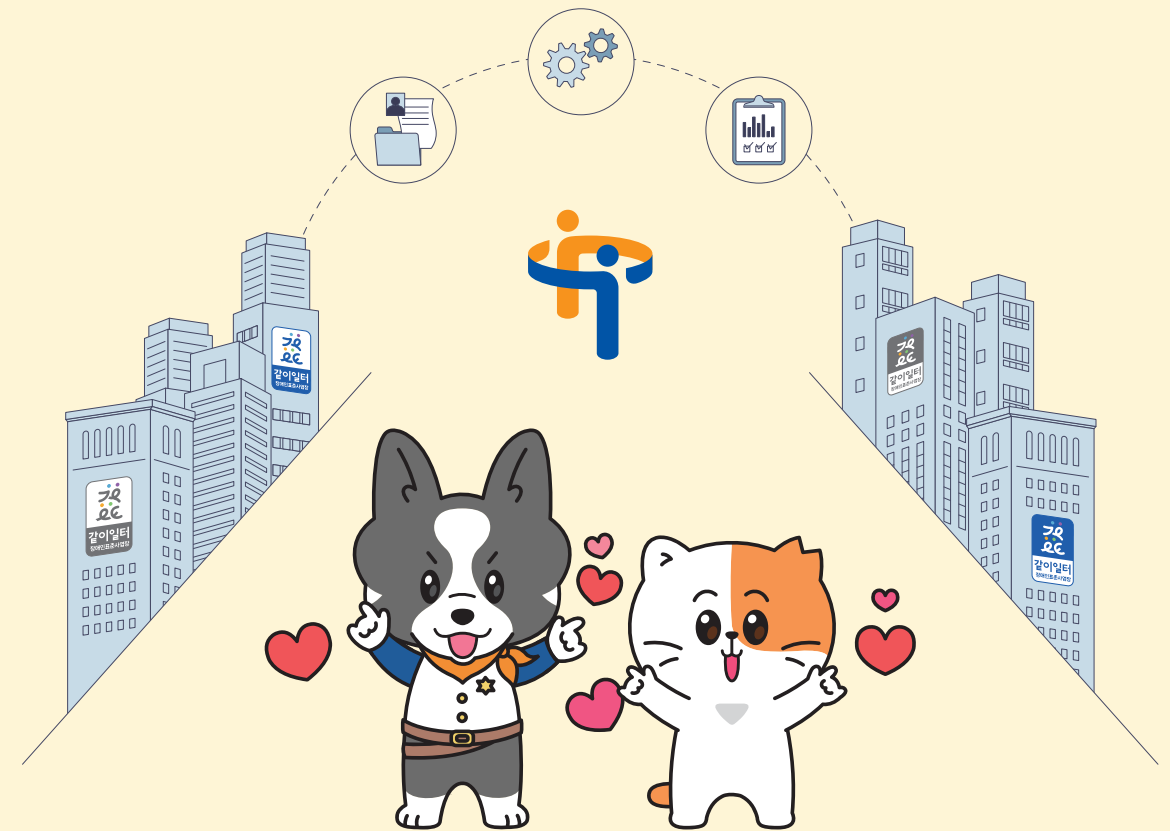
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

발행월 2026년 7월
발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주소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대표전화 1588-1519
홈페이지 (공단) www.kead.or.kr
(홍보사이트) gachiilteo.or.kr

*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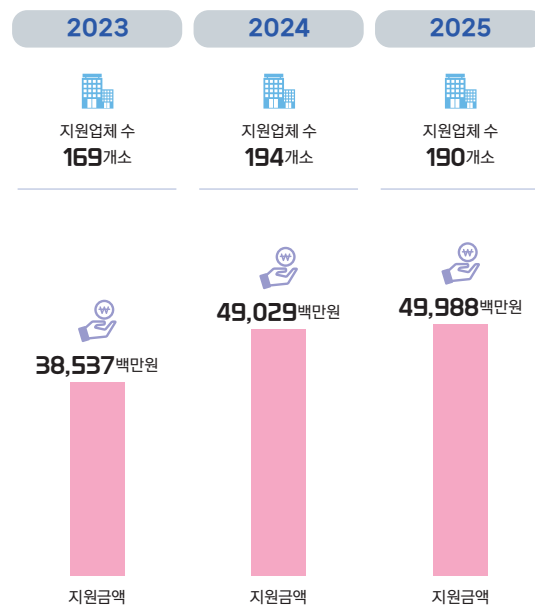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표준사업장 통계 (2023-2025년)

전체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및 장애인 근로자 수

2023	2024	2025
 인증업체 수 694개소	 인증업체 수 797개소	 인증업체 수 873개소
 상시 근로자 수 27,610명	 상시 근로자 수 31,098명	 상시 근로자 수 34,887명
 장애인 근로자 수 16,093명	 장애인 근로자 수 18,115명	 장애인 근로자 수 19,639명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12,930명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14,474명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15,6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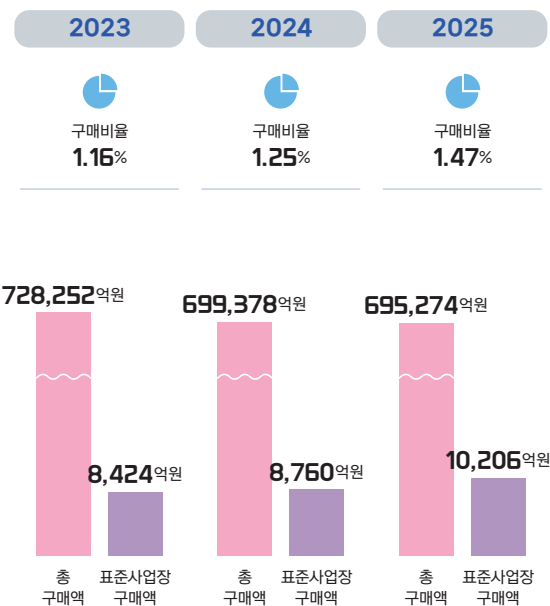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현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및 장애인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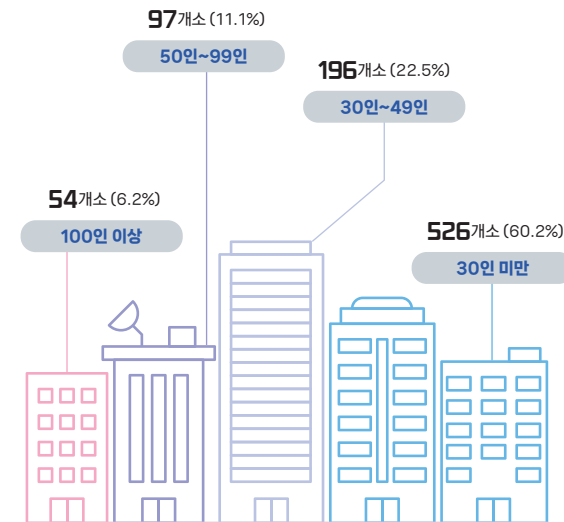
2023	2024	2025
 인증업체 수 150개소	 인증업체 수 170개소	 인증업체 수 191개소
 상시 근로자 수 10,659명	 상시 근로자 수 11,856명	 상시 근로자 수 13,214명
 장애인 근로자 수 7,040명	 장애인 근로자 수 7,812명	 장애인 근로자 수 8,784명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5,649명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6,390명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7,250명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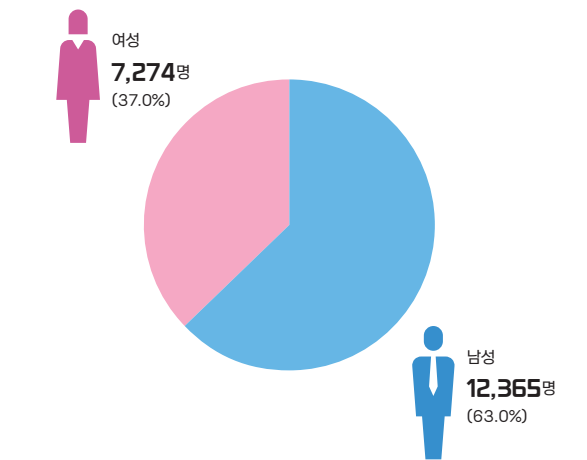


▶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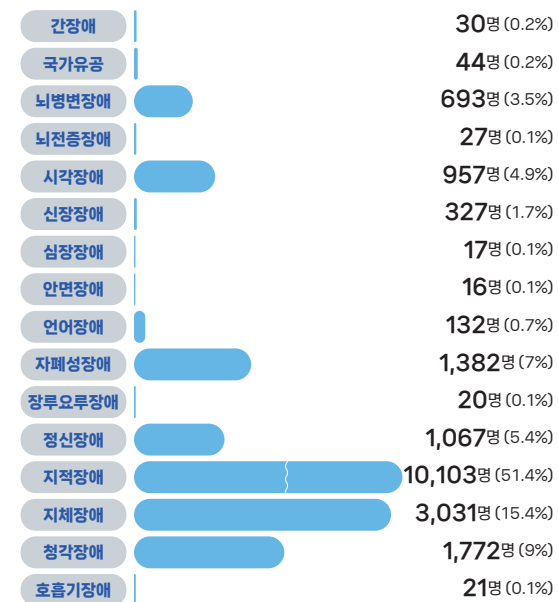
상시 근로자 규모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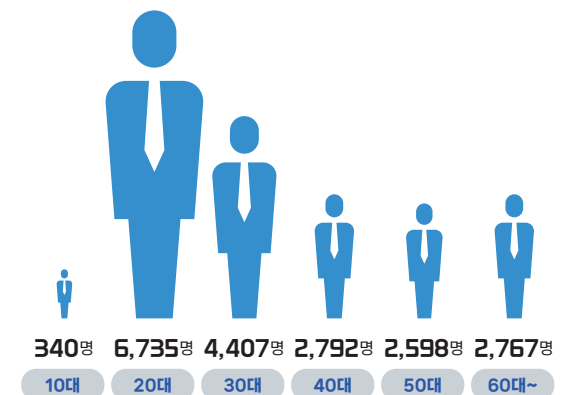
장애인 근로자 성별 현황



장애인 근로자 장애유형별 현황



장애인 근로자 연령별 현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



개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 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시행 연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 2002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 2013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2조,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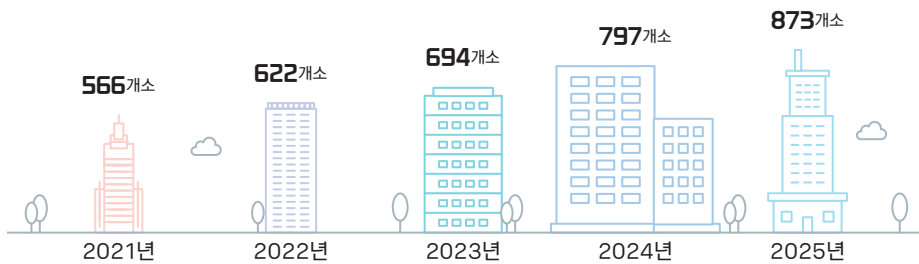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의4
- ☑ **신청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을 갖춘 사업체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청
- ☑ **인증 기준**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아래 기준에 따른 고용비율 준수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증장애인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계약 권장
 - ** 그 밖 인증기준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위원회 진행
- ☑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신청 전월 임금대장,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업주의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증빙자료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사업주의 취업제한 대상자(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범죄 등) 해당 시 인증 불가
 - ** 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서식 자료실 참조
 - 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표준사업장 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에 따른 혜택

-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은 50%, 그 다음 5년간은 3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 * 단, 감면한도는 1억원 + 장애인근로자수(상시) × 2천만원
-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 우선구매(총 구매액의 0.8%이상) 적용**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물(물품 및 용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7의2 라목)
 - 국방부와 물품 계약 시 적격심사에 대한 가점 부여(국방부 훈령 제3035호)
 - * 우선구매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생산물 직접생산 확인 요건(장소, 공정, 시설, 장비, 자격,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로 형태 등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 **고용부담금 납부사업체와 연계고용 계약체결 가능**(단, 자회사형 및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제외)
 -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표준사업장 사후관리

- ☑ **분기별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 고용의무인원, 편의시설 유지 여부 확인
 -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여부 점검
 - 취업제한 대상자 조회·점검(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 대상) 등

BI

- ☑ 장애인 고용 사업의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안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표하는 BI(Brand-Identity)로 '같이일터'의 초성(ㄱ, ㅁ, ㄷ, ㅌ)을 변형하여 사람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함께, 평등하게 일하는 가치"를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화합'과 '조화'의 가치를 담고 있음
- ☑ BI파일은 생산물 홍보사이트(www.gachiilteo.or.kr)자료실 게시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신청 자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 불가

☑ 지원 대상 사업주 선정

- 공단의 사전조사,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주를 결정
 - * 심사기준에 의해 적격사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문화예술분야 사업주, BF인증(계획포함) 사업주,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주는 평가 시 우대가점 적용

☑ 무상지원금 용도

-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일부(최대 2년, 월 300만원 한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 비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각종 인증취득 및 컨설팅 소요 비용

☑ 지원한도 및 조건

- 총 투자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총 10억원 한도)
 -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최대 20억원
 - * 무상지원금 9억원 이상 지급받은 사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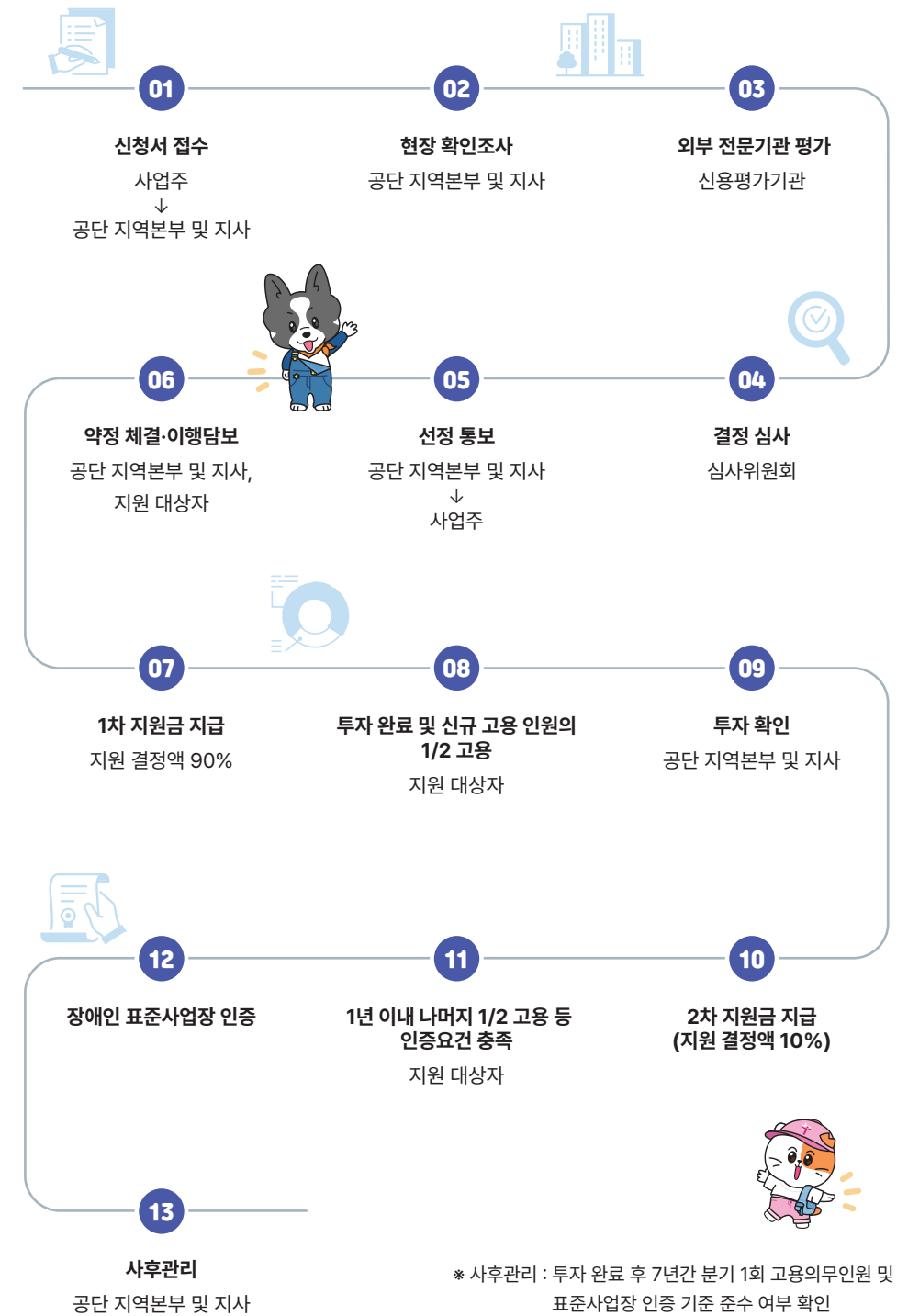
☑ 지원을 받은 사업주의 의무

- 총 지원금액을 4천만 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 수만큼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하여 7년간 유지(고용의무 미이행 시 기간 연장)
- 투자완료 후 1년 이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준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 유의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 으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용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지원금의 회수와 함께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지급 절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개요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 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기간은 고용부담금 감면 산정에서 제외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지원 내용 등

- 지원 금액 및 조건, 사업주의 의무, 인증시의 혜택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 의 내용과 동일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따른 내부거래 예외 인정
 -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물적 사항을 예외로 인정함
 -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09.12.9)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신설(제22조의3, '12. 12. 18)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 지급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인증 시 혜택
 - 지원 금액 및 조건, 지원금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및 기타 인증 시 혜택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의 내용과 동일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① 모회사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
 - ②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③ 자회사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규모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100인 미만 규모 표준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15%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⑤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자회사 설립 방법

- 자회사 신규 설립
- 두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
출자비율만큼 장애인고용률 산입
- 모회사의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를 전환
- 기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자회사로 전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개요

- 중증장애인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호」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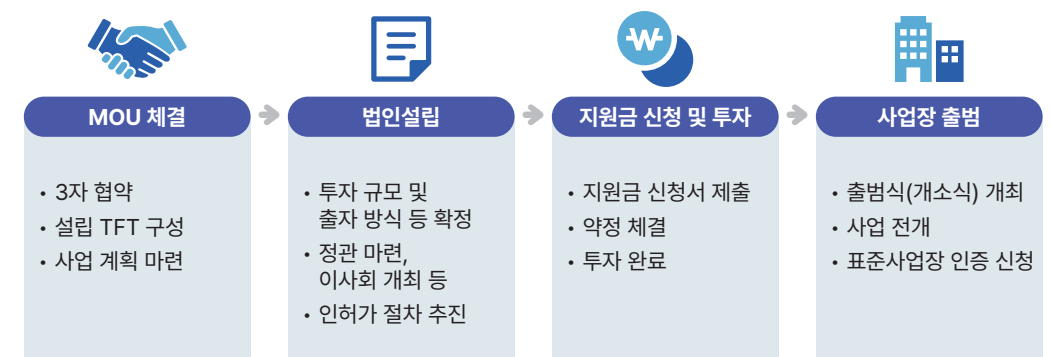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무상지원금 지원(최대 20억원)
- 사업주의 의무, 지원 조건, 인증시의 혜택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의 내용과 동일
* 단,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지원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

설립 및 지원절차



- 공공기관, 민간기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자 협약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기관 설립 관련 내부 계획 수립, 설립에 관한 타당성 연구 용역, 조례 재정 등의 절차 검토 필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

개요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창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도

근거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호」 제3조

지원 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 지원 대상 및 조건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자
 -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의3 초기창업자 기준)
 - 창업자금으로 투자완료 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준수하여 3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지원금 용도
 -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 지원 한도 : 최대 5천만 원(1회)

지원 절차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목적

- ☑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물품 및 용역)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제1항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12.12.18 법 개정, '13.6.19 시행)

- (목적)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판로 개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 (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총 구매액의 0.8%로 규정('22.12.31. 고시 개정)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14년부터 공단에 제출)
-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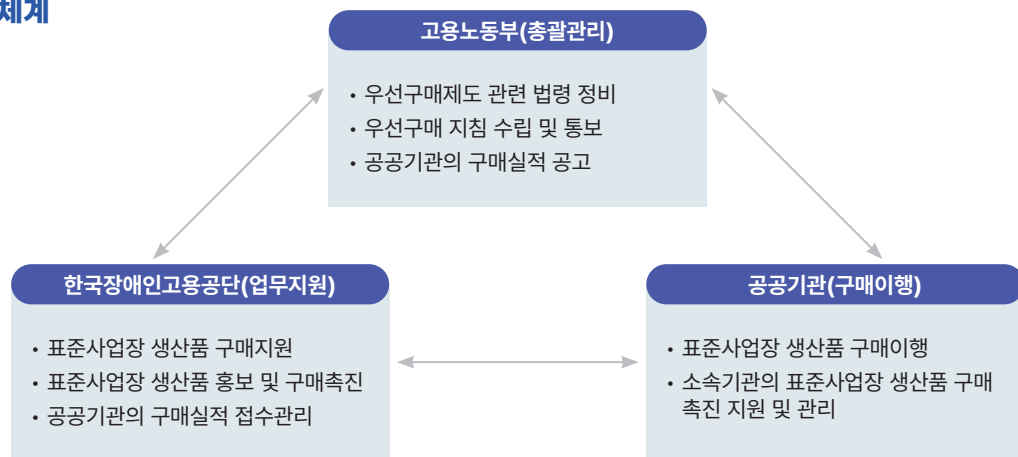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우선구매 목표 비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6호(2022.12.31.)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 공사비 제외)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산품홍보사이트(www.gachiilteo.or.kr)]으로 제출

업무체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생산* 한 물품 및 용역
- * 생산이란 제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생산 또는 용역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노무(제조, 포장, 품질관리, 출하 보관, 유통)를 의미

간접구매 실적 인정

-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직접 구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기관과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한 경우 구매실적 인정

기타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
- * 장애인 표준사업장 명단 및 생산품 정보는 www.gachiilteo.or.kr에서 확인
-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연도의 구매계획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에 게시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원활한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서 발급 및 관리하는 제도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여부 확인 필수

관련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란?

- 사업체에서 장소, 공정, 설비, 인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생산공정에 장애인 근로자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생산품을 직접 생산 혹은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체

직접생산 부적합 사례(예시)

- 타사 완제품 납품 또는 다른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포장만 한 경우
- 수입 완제품 또는 수입 제품에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 생산공정 과정 전부를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 장애인 근로자가 생산공정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신청기간 : 연중 4회 이상 실시
- 제출서류: 신청서, 생산공정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직무기술서 등
- * 신청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kead.or.kr) 및 생산품 홍보사이트(gachiilteo.or.kr) 공지사항 참고

처리절차



*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음

사후관리

- 정기 : 유효기간(3년) 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1회 확인
- 수시 : 부정 의심사례, 민원 접수 등 특이사항 발생 시 확인

▶ 장애인 표준사업장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개요

- ☑ 영세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품질·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등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여 판로 확대 및 매출 증가를 통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컨소시엄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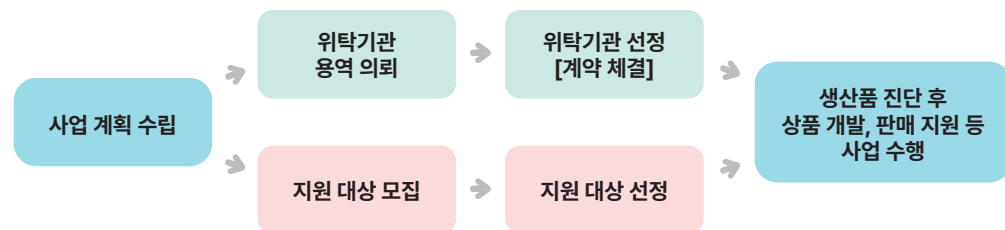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지원 내용

- ☑ 생산품 품질·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등 홍보·마케팅 전문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 10개소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컨소시엄형 제외)
 - 지원 요건 : 총 200백만원,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 위탁기관 운영에 따라 표준사업장 직접 지원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방법 : 전문기관(1개소)을 선정하여 참여 사업체 대상 직접 지원
 - 선정 기준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성장 가능성, 제품 경쟁력,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매출액 등을 정량·정성평가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원 항목 : 브랜드 개발, 품질·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마케팅 등

지원 절차



- ☑ 수시 : 부정 의심사례, 민원 접수 등 특이사항 발생 시 확인

▶ 더 편한일터 만들기 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개요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인증 대상

- ☑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

인증 신청자

- ☑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인증 절차

- ☑ 예비인증-예비인증 신청 시기 : 설계단계(본인증 신청 전)
- ☑ 본인증-본인증 신청 시기 : 준공단계(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인증유효기간

- ☑ 예비인증은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본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
- ☑ 본 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연장 가능

▶ 장애인 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편의시설 컨설팅

개요

- ☑ 장애인 고용(예정) 사업장에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고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2항

지원 내용

- ☑ 사업장 상황에 맞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범위를 제공
- ☑ 설계 단계부터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치 방법을 제공
- ☑ 사업장 건물을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는 편의시설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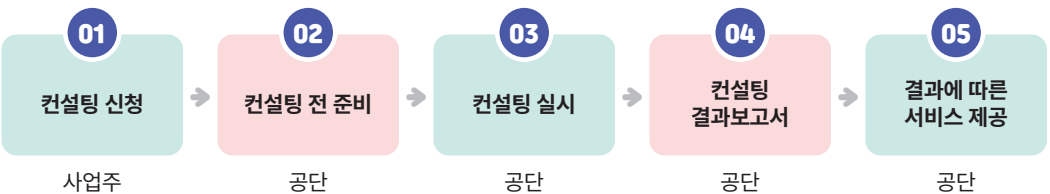
신청 자격

-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신청(연중 수시로 신청)

제출 서류

- ☑ 신청서, 건축물대장, 건축도면 등 사업장 현황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

처리 절차



개요

- ☑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비 등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지원 대상 및 한도

-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 (지원 한도) 사업주 당 15억 원 이내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및 요건	지원조건	융자기간, 대출금리
• 작업시설 -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설 • 부대시설 -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 통근용 승합자동차 등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5년간 고용유지 (의무고용인원의 25% 중증 고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사업주 부담 금리 :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최대 5%)을 제한 금리 * 융자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광주,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신청 및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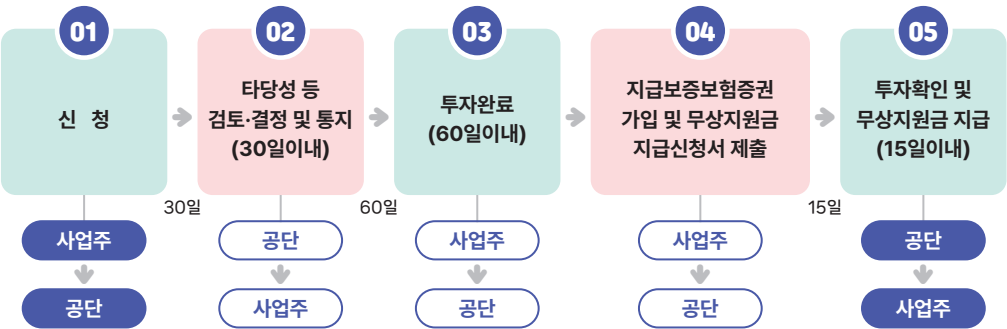
▶ 장애인 고용 시설장비 지원

- 개요**
 - ☑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등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 지원 대상 및 한도**
 - ☑ 사업주 당 3억 원 이내

지원 내용

구분	시설장비 유형별 지원내용		
지원항목	편의시설* 작업대, 작업장비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대상시설별 의무 및 권장 편의시설에 한함	통근용승합차 구입비용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고용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	재택근무로 중증장애인을 신규고용한 사업주 * 신규고용 : 채용 후 3개월 이내
지원상세	• 1천만원 이하 : 전액 •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1천만 원 초과분의 2/3	• 장애인근로자 10~19명 : 2천만원 이내 •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 : 4천만원 이내	• 장애인근로자 1명 당 3백만원 이내 • 사업주 당 3천만원 이내
지원조건	• 무상지원금 1천만원 당 (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 당) 장애인 1명 고용 • 2년 간 장애인 고용 및 시설 유지	• 2년 간 20명 이상(2천만원 이하 지원 시 10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 유지 • 5년 간 지원 용도대로 사용 * 통근용승합차는 10년에 1번, 최대 2번 지원가능	• 2년 간 장애인 고용 및 장비 유지

신청 및 지원절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기관 주소 및 연락처



소속기관명	전화	소재지
본부	031)728-7001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고용개발원	031)728-70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양동)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경기지역본부	031)300-09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서울북부지사	02)6312-53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상계동)
인천지사	032)242-1004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울산지사	052)226-1004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31, 10층(달동)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3층(구미동)
경기서부지사	031)500-24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층(고잔동)
강원지사	033)737-662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충북지사	043)230-6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충남지사	041)629-6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전북지사	063)240-24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전남지사	061)983-180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경북지사	054)450-300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경남동부지사	055)225-80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경남서부지사	055)922-19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2층(칠암동)
제주지사	064)710-5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